

□ 기술애설 □

# 최근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동향과 대응전략

-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

법무법인 삼정 김영철

## 1. 무한경쟁시대의 지적재산권

지금 우리는 거센 변화의 흐름속에 있다. 그 큰 흐름중의 하나가 국제화임은 우리 모두가 익히 느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은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고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경쟁력 강화의 전략중에서도 특히 기술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쟁력을 표상하던 자본·노동과 자원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이체는 기술과 정보가 새로운 경쟁력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진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기술진보의 시대에서 누가 먼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여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경쟁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간에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한 기술주도권 쟁탈전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결국 지식산업 위주의 고도의 정보화사회가 될 21세기에는 지적재산권이야말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제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기술의 활용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기술을 보호하고 남의 기술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살아 남는 길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과 개발된 기술을 지적재산권으로 무장하는 길 뿐일 것이다.

## 2.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동향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그 제도는 19세기 중엽에 확립되어 오늘날에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재산권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확산·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재화로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화인 까닭에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또 국제적인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크며,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1883년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과 1886년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등 일찍부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교통, 정보, 통신의 획기적인 발달과 기업활동의 세계화 경향에 따라 세계시장이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통합되고 각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

역시 극도로 심화, 확대되고 있음이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과 정보의 이전이 많아지고 기술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정보 분야의 보호에 관하여 서로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경제거래에 있어서 제품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가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기술과 지식의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국제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키 위해 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적인 조정과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국제통상문제로 특히 등 지적재산권문제를 다루기에 이르렀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6년 중반부터 GATT 회원국들이 Punta del Este(Punta del Este) 각료선언으로 기존의 GATT체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개시한 이래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최종의정서가 정식으로 조인됨으로써 드디어 1995년 1월 1일자로 WTO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또한,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UR협상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적재산권보호가 국가기술개발정책과 관련된 신기술개발이라는 전통적 의미를 벗어나 지적재산권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교역의 중요한 수단이자 교역대상이 되어 지적재산권보호의 국제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의 능동적 요소로 그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이 TRIPs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TRIPs협정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둘째, 기존의 조약의 미비점인 집행절차와 분쟁해결절차가 갖추어짐으로써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셋째, 기존의 조약은 각 분야별 조약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음에 반해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적인 조약이다. 넷째, 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체계적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다섯째, WTO의 모든 회원국이 TRIPs협정에 당연히 가입하게 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범세계

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섯째, 개인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이 국제규범을 통해서 보호받게 되었다. 이것은 지적소유권이 개인의 권리가 되는 하나 국가의 이해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 3. 새롭게 다가오는 지적재산권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 하면 유형의 재화에 대한 권리, 즉 종래의 소유권 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 내지는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에 대한 권리, 즉 현대사회(정보화사회, 기술사회)에서 중요한 재화로 인정되는 무형의 정신적 창조물인 “기술”, “지식” 또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정신적 창작의 결과인 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데이터 베이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지적재산 내지는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체계를 일컫는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인 창조물을 보호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지적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각국의 산업·문화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신기술, 산업적 디자인, 상표 등 산업활동의 영역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며, 새로이 그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 생명공학 및 변종동식물 등은 신지적재산권이라 칭하고 있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다. 각국 법제의 근본 취지는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TRIPs

협정의 '최소한의 의무'에 따라 각국의 법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공통된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TRIPs협정을 살펴보면, 동 협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국제조약으로서 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질서를 규율할 다자간 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① 저작권 ② 상표 ③ 지리적표시 ④ 의장 ⑤ 특허 ⑥ 반도체집적회로 ⑦ 영업비밀 ⑧ 반경쟁적행위특제의 8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보호기준과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8개 분야중 특히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특허 등을 포함하는 전통적 의미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역시 강화된 것은 물론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분야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저작권과 영업비밀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 지식사회 등 미래사회를 표현하던 용어들이 이미 현대를 대변하는 일상어가 되었고 냉전 이후 각국이 이념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술과 정보는 국가, 기업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다. 얼마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윈도우즈 95'를 비롯하여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CALS, 멀티미디어, 정보고속도로 등은 모두 생존무기로서의 기술과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의 소프트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됨에 따라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산적 가치라는 측면과 더불어 경쟁력의 요소라는 측면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존의 산업재산권과 병행하여, 또는 산업재산권과는 별도로 이를 지적재산권의 체계 내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과 영업비밀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 향후에 등장할 신기술 또는 새로운 지적 창작물에 관하여는 단지 산업재산권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폭넓게 보호될 것이 분명하며, 오히

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내지는 영업비밀의 역할이 산업재산권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산업재산권과 더불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의 국내외적 변화의 동향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1 저작권

시대의 발달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정보산업시대의 시대가 도래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정보를 창조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여 이를 저작권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추세에 있게 되어 저작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저작권은 예술, 문학, 음악 등 전통적인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출판(예: CD-롬 타이틀), 멀티미디어, 디지털송신, 유·무선방송,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 국가의 경제력에 필수적인 산업분야, 특히 정보사회에서의 최첨단산업 분야에도 깊숙이 관련을 맺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IPO 특정 저작권 및 저작권인접권 문제에 대한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된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저작권 제도상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중전달권의 적용 범위를 넓혀 디지털 송신을 포괄하도록 하고 기술장치와 권리관리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는 앞으로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EC 및 일본에서도 저작권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제적인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 3.2 영업비밀

지난 1994년초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일진다이아몬드와 미국 GE사간의 분쟁사건에서 보여지듯 외국의 전문인력, 기술자를 스카웃해 타사의 영업비밀에 무임승차를 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게 되었으

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영업비밀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과 활용도가 한 차원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흔히, 노하우(Know-How) 등으로 불리는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우선 기술상의 정보로 설계방법, 설계도면, 실험데이터(실패한 실험데이터 포함), 제조기술(예 : 코카콜라의 향내는 방법, 고려청자의 상감기법 등), 연구레포트 등을 들 수 있고, 또 경영상의 정보로 고객명부, 거래선명부, 판매계획, 제품의 할인시스템, 부기방법, 사무실관리방법 등을 들 수 있는 바, 기업활동과 깊숙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까지는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삽입된 국제적 협약이 없었으나, 미국의 주도로 TRIPs협정에서 영업비밀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됨으로써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먼저 EC와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고 있고, 브라질,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와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는 물론,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보호제도가 보급되는 등 이 제도의 국제화가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4. 우리의 위치와 전망

한편 이와 같이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경쟁의 강력한 무기로 지적재산권이 등장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경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해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선진국의 위상을 누리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한층 높인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 12위권의 교역대국이고, 세계 5위권의 산업재산권 다출원국인 우리나라가 그러한 위치에 서야 함은 물론 당연하나, OECD가입은 우리에게 국제무대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미국, EU 등 다수 선진국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TRIPs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개도국 지위를 견지하고 있으나, OECD가입으로 향후 선진국 지위에서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RIPs협정과는 별도로 현재 세계 각국의 특허법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WIPO를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 형태로 새로운 특허법조약안을 토의하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 특허법 조약이 타결되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세계질서에 또 한번의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 5. 새로운 지적재산권 환경에의 대응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환경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세계의 많은 기업들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먼저 TRIPs협정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동향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TRIPs협정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국제수준으로 향상됨으로써 선진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개도국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의 신기술·상품을 후발개도국이 모방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바, 지

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양자간 통상압력 완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협정이라는 균형된 다자간 국제규범이 설정됨으로써, 미국 및 EC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한 통상압력을 완화시키킬 수 있다. 즉, 협상시 선진국의 공격적인 입장이 강한 양자협상의 결과보다 균형적인 TRIPs협정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협상결과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이의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로열티의 지급이 증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강화로 우리 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면 외국의 기술제공자는 지적재산권이 도용됨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되어 로열티를 낮추게 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지급액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선진국이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TRIPs협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어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협상력이 약한 국내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지적재산권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협정 및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외국 권리자의 권리행사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오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외국 기업의 권리행사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동종 기업들이 특허 등을 포함하는 기술정보의 공동사용 등을 추진하여 기술정보의 공동소유를 통해 외국 기업의 기술공세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단기적인 대응과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원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적재산

권과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R & D 투자확대를 통해 독자적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기업간 연구조합, 국제적인 연구 컨소시엄 등을 적극 개발, 활용하여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선행자료의 조사이다. 지적재산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생산단계 이전에 선행자료를 조사하여 생산할 제품이 기존의 지적재산권과 저촉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라이선스 교섭을 하여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선행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미리 상품을 생산하면 후에 분쟁에 휘말려 고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선행기술조사 없는 무모한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

한편, 원천기술이 취약한 분야는 선행자료를 조사하여 그 기술의 개량을 추진하고 개량기술을 권리화하여 분쟁 발생시 라이선스 교섭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원천기술을 개량하여 개량기술을 각국에서 권리화하여 둠으로써 분쟁 발생시 이를 활용하여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전략으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김 영 철**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2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 1982~1990 김·장 법률사무소 (KIM & CHANG) 에서 소송 및 국제 지적소유권 전문변호사겸 변리사로 활동
- 1990 김·황 법률특허사무소 (KIM & HWANG) 개설
- 1991 삼정법률특허사무소로 명

직 변경  
1996~현재 법무법인 삼정과 통합